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3. 5.(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년 3월 5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4 - 25
- 나. 발 의 자: 전철규 의원 외 7명
- 다. 발의일자: 2024년 2월 20일
- 라. 회부일자: 2024년 2월 23일

2. 제안이유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건설공사¹⁾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법체계 정비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 나. 위원회 기능 추가 (안 제2조)
- 다.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3조)
-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
- 마. 자문방법에서 심의·자문 요청 등으로 추가 (안 제7조)
- 바. 위원회의 회의 구체화 명시 (안 제8조)
- 사. 처리기간 및 결과 통보 사항 추가 (안 제9조)
- 아.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변경 (안 제10조~제12조)
- 자. 심의·자문 사항의 사후관리 사항 추가 (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 나. 협조부서: 도로과
- 다. 입법예고(2024. 2. 23. ~ 3. 4.)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목적(안 제1조)

- 조례의 설치근거인 상위 법령을 변경함.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위원회의 기존 ‘자문’ 기능에 ‘심의·의결’을 추가함.
-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 총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2)에 따른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함.
- 이는 현행법상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만 설계심의 대상에 해당되어,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시설물이 제도상 관리대상에서 누락되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 2)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강서구가 자문하는 사항

○ 구성(안 제3조)

- 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 →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변경하고
- 위원장을 부구청장 → 소관 국장으로 변경,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소관부서 과장으로 변경,
- 위원 위촉 방법은 구청장 위촉 →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
- 또한 위촉 위원의 임기와 간사, 서기를 두는 조항을 신설
- 다만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안 제6조)

-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변경(안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임시로 선임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 심의·자문 요청 등(안 제7조)

-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

○ 위원회의 회의(안 제8조)

- 위원회 회의 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 위원회 수를 '7명 이상'으로 정한 규정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회의 총족 최소 인원인 7명이 회의를 개회할 시 위원회 최소 총 위원 수(30명) 대비 24%에 불과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위원회의 회의)제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안 제9조)

- 위원회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자문) 요청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을 명시함.
- 이는 위원회 운영의 적시성 확보 및 (심의·자문) 요청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됨.

○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 소집, 심의·의결(안 제10조~제12조)

- 기존 제6조~제7조를 안 제10조~안 제12조로 변경하여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회의 소집, 심의·의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함.
- 다만 소위원회라도 위원회 수를 '5명 이상 7명 이내'로 정한 규정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회 수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심의·자문 사항의 사후 관리(안 제14조)

-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명시함.

다.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안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등 정비·운영을 통해, 중·소규모(100억 미만 건설공사)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 최근 3년간(2021~2023) 관내 총공사비 50억 이상 100억 미만 건설공사 현황 -

연번	발주부서	계약연도	업체명	공사명	공사금액(원)
1	건축과	2022	풍성건설(주)	강서(서남권) 안전교육센터 신축공사	7,338,955,090
2	물관리과	2022	고양종합건설(주)	2022년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연간단가)	5,262,359,000
3	물관리과	2023	(주)신영토건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1권역)	6,766,430,000
4	물관리과	2023	시경산업(주)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권역)	8,239,506,000
5	물관리과	2023	(주)이진종합건설	방화 1-9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3권역)	6,225,450,000

- 개정 및 신설된 조항들은 조례로 위임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선임 및 위원의 수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향후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설공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위원 성별도 균형 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의 구성 등)
 ①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5년간(2019~2023)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개최실적(건수): 해당 없음
 ※ 최근 5년간(2019~2023) 강서구에서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심의 요청 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건수	1	1	4	2	0	8

붙임1

강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현황(2024. 2. 기준)

연번	분야	직위	성명	성별	기관명	자격	비고
1	행정	위원장	박대우	남	강서구청	부구청장	당연직
2	행정	위원	김장성	남	강서구청	도시관리국장	당연직
3	행정	위원	김진철	남	강서구청	안전교통국장	당연직
4	토질및기초	위원	안진호	남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위촉직
5	토목구조	위원	양승이	남	(주)딥마인드	토목구조 기술사	위촉직
6	토목시공	위원	정회평	남	다산건설턴트	토목시공 기술사	위촉직
7	토목시공	위원	최장원	남	(사)한국도로기술사회	토목시공 기술사	위촉직
8	상하수도	위원	김재승	남	(주)유신	상하수도 기술사	위촉직
9	도시계획	위원	김창호	남	(주)에이치텍건축사	도시계획 분야 경력	위촉직
10	건축	위원	김은주	여	(주)센구조연구소	건축구조 기술사	위촉직
11	건축	위원	김대성	남	(주)신예E&C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위촉직
12	건축	위원	신 혁	남	리뉴엔지니어링 사무소	건축구조 기술사	위촉직
13	전기	위원	김선태	남	서주산업개발	전기분야 특급감리	위촉직
14	조경	위원	이선화	여	지호디자인	조경기사 및 경력	위촉직
15	환경	위원	양 선	여	(주)마노엔지니어링	소음진동 기술사	위촉직
16	교통	위원	고주연	여	(주)이산	교통기술사	위촉직
17	안전	위원	김천학	남	홍익기술단	건설안전 기술사	위촉직
18	안전	위원	지세진	남	반석안전(주)	건설안전 기술사	위촉직
19	가스	위원	정우현	남	서울도시가스 서부지사 강서팀장		당연직
20	소방	위원	안선연	남	강서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장		당연직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 ⑥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및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아목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바목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설
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5.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
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
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업자 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영 제19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을 제외하고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사유 및 기본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10.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
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설공사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설계·시공 등의 분
쟁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